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

임용분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	직무내용
정책지원관	한시임기제 7호	1명	강남구의회 (정책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6. 12. 31.

※ 휴직연장 등 사유발생 시 최대 1년6개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6.4.27.(월) ~ 4.29.(수)	'26.5.6.(수)	'26.5.13.(수)	'26.5.14.(목)	'26.5.22.(금)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2.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지방자치, 정책기획, 예산, 감사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또는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관련 근무 경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우대요건 : 정책지원관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시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전임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9조의4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

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채용직급	근무시간	봉급기준액	주35시간 환산액	비 고
한시임기제 7호	주 35시간 (1일 7시간)	2,548,800원	2,230,200원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인성검사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방 법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
 - ※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면접 시 활용
 - ※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

2차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방 법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4.27.(월) ~ 4.29.(수) 18:00까지 / (3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3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평일 09:00~18:00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사전연락 필수 ☎: 02-3423-8103)**

- ▷ 주소 : 우)06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4, 3층 의정팀 (강남구의회, 대치동)
- ▷ 우편 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02-3423-8103)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현금×, 정부수입증지×**)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3×4cm) 1매 이메일 제출(docbee@gangnam.go.kr)

- 응시수수료 : 강남구 수입증지 7,000원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 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 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응시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 ~ 13:00)제외)에 한정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423-8103)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부서)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책지원팀)	한시임기제 7호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구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 청렴성 및 책임감, 사명감과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 의회운영, 의사진행,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 조례안, 결의안, 예산안·결산 등 의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작성 능력 •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회의운영,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 조례안, 건의·결의안, 예산안·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
-------------	--

응시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지방자치, 정책기획, 예산, 감사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또는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관련 근무 경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우대요건 : 정책지원관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